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49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흥

담당변호사 장수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강보

변론 종결 2020. 10. 13.

판결 선고 2020.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72,375㎡(이하 'C'이라 한다), D 임야 63,034㎡(이하 'D'이라 한다) 중 일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2016. 7. 19. 500만 원, 2016. 7. 26. 2,500만 원, 2016. 8. 11.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6. 11. 15.자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C 중 6,611㎡(2,000평)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원고의 동생인 G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11. 15.자로 G이 소외 회사로부터 C 중 3,205㎡(1,000평)을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C은 2016. 12. 19. H 명의에서 201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로, D은 2017. 9. 26. H 명의에서 2017. 9. 26.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단독으로 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와 공동으로 소외 회사가 C, D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위 토지를 소외 회사에서 매입하여 I 와 J로 개발계획 중이니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에게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지인을 통해 C, D 토지에 산림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F를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소개하여 원고가 직접 소외 회사로부터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한 것이고, 다만 피고는 F의 부탁으로 편의상 원고를 포함한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위 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소외 회사 내지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였을 뿐이다.

3.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9.경 및 2016. 8. 19.경 원고에게 C, D 토지 매매대금 3,000만 원 및 1,500만 원을 각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 데, 위 영수증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감사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는 C, D 토지 소유자였던 H과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H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를 속인 점, 소외 회사로부터 위 토지 일부를 매수한 매수인들은 원고 이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함매수인들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 및 F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도 원고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점,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F와의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오히려 피고는 다른 매수인들과 함께 F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F를 형사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